

제4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5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31)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1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1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1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1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1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008)
19.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

2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
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67)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2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2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3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3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20)
3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0)
3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4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4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5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5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5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54.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5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5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5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5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6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6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 

### 상정된 안건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31) .....	4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	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	4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	4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	4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	4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	24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	24

---

(10시15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농자재 이것 쟁점 법안이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를 하고 이 쟁점 법안을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윤준병 위원** 이건 저번에 다 했는데요?

○**김선교 위원** 다 했어요?

○**윤준병 위원** 예, 정리 다 해 놨어요.

○**김선교 위원** 그러면 빨리 끝나는 겁니까?

○**윤준병 위원** 예, 바로 끝나는 거예요. 답변만 하면 끝나 버리지.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0시17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2시간 가까이 토론하고 또 쟁점도 정리가 돼 있고. 위원님들, 여기 파란색 들어가 있는 참고자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총괄 논의와 토론을 했으니까 조문 심사해 가면서 파란색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윤준병 위원** 조문 정리를 그냥 하시는 게 어때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걸로?

○**임미애 위원** 그냥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하자고……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쟁점 중심으로 정리돼 있어 가지고……

○**윤준병 위원** 예전에 할 때 거의 다 정리했고 사실은 정부 의견만, 기재부 의견만 받으면 다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총괄 심의를 그때 했고요. 조문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면서 정리하겠

습니다.

지금 제명, 11페이지지요?

제명은 파란색 자료를 보면 대안으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페이지 목적.

파란색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이라고 돼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의 정의, 파란색 자료 보면 3페이지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항 보시면 공급망 위험이란 개념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4항에 가면 ‘농자재란 농업 생산’에서 ‘생산’을 지우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농업에 사용되는 소모성 투입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은 순연되는 거고요. 5항까지 있었던 걸 6항으로 늘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돼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수정의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넘어가겠고요.

22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수정의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3페이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파란색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25페이지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파란색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십시오.

‘공급망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전종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너무 속도가 빨라 가지고……

지난번에 지원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 가격 10% 하락, 5% 상승 이 기준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논의하면서 그것 검토하시기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시행령으로 그걸 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7조 3항에 보면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지원기준은 그 조문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령에 정확하게 몇 프로 이런 기준을 담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100% 올랐고요. 그걸 참고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도 대략 가이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할 때 21년 중반에 생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해서 요소 같은 경우에는 100% 상승했고요. 기름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상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전종덕 위원 그러면 100% 상승하면 100%를 다 지원해 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줄 건지 또 지원비율은 정해야 되고요.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공인회계사 검증을 해서 만약 어떤 A 기업이 50원 올려야 되는데 70원 올렸다면 그거는 미리 배제를 시킬 겁니다. 미리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범위라든지 몇 프로의 비율로 정할 건지는 시행령에 담거나, 지원비율은 그 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도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에 명확히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체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담을 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 가지고 다 보기가 어려워서……

○소위원장 이원택 실효성 있는, 장벽이 너무 높으면 법 만들어 놔도 의미가 없고 너무 낮으면 또…… 재정 낭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편적 현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저희들이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좀 적절하게 마련을 하고 시행령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도로 하고 있는지.

○소위원장 이원택 그 시행령 안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시행령을 미리 보고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위원회의 설치를 보시면 제 기억에 그때 수정의견에 동의를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7페이지,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파란색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대안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 이것도 좀 논쟁을 했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9조 1항이 있고 2항은 조정을 한 거고요.

파란색 11페이지 보면 10조는 삭제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입니다. 파란색 참고자료 보시면 12페이지고요, 수정된 대안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3항, 4항이 신설된 안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파란색 자료 15페이지.

‘지원을 할’을 ‘지원을 하는’으로 바꿨고요. ‘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 감축을 위하여’ 이렇게 바꿨었네요.

그다음에 1항의 2호가 삭제된 거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거라서 많은 문구가……

○**윤준병 위원** 어떤 게요?

○**전종덕 위원** 이 자료가 오늘 본 거잖아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것 예전에 얘기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때 위원님이 중간에 가셨던가?

○**전종덕 위원** 아니, 저는 오늘 봤는데 내용이 그 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대안 1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차관님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파란색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왼쪽이 원안인데 거기에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가 1호고요 2호가 친환경 농업자재였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삭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료나 유류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대 지원하게 했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어업법에 있는 것만 삭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종덕 위원** 이걸 삭제해도 어디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친환경농어업법에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친환경농어업법에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타 법에 지원규정이 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13조는 빨간 글씨를 추가했습니다. 공급망 위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조세의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거기에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

승으로 인하여'를 집어넣었습니다. 제명이 바뀌고 해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 보조사업 점검 및 환수 등.

차관님께서 17페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파란색 17페이지 3항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원래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점검하는지 사업지침에 다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과잉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관이 정해서 사업지침을 정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61페이지, 충복 지원의 제한 그건 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지난번에 동의……

○**소위원장 이원택** 예.

63페이지, 수정의견 17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권한의 위임, 차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지금 파란색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18조는 1·2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걸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농정원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공무원 내부 일이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위탁기관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필요 없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사업지침상에서 그냥 정하면 됩니다.

○**윤준병 위원** 위임만 있고 위탁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빼고 위임만 남겨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권한의 위임·위탁에서 위탁을 뺀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파란색 제18조(별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자료 19페이지고요, 두꺼운 자료는 69페이지입니다.

대안을 보시면 조문이 바뀌면서 18조 2호에 인용되는 항이 제11조제6항이 아니라 제10조제8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70페이지 과태료, 차관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과태료는 자료 70페이지 보시면 아래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1조 2항, 15조 2항이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조항이 11조 2항은 10조 2항으로 갔고요 15조 2항은 14조 2항으로 갔습니다.

신설된 것은 2호에 있는 10조 3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 조사할 때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을, 대안이 제시되면서 그 조항이 과태료 조항으로 다시 신설된 것들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과태료 100만 원 이하면 실효성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건 사실 협조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게 통계법상에 있는, 들어갈 때 그런 조항들을 따라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실효적인 조항이 앞에 가면 사업을 지원 배제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과태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 71페이지.

수정의견에 보시면, 가운데 보면 ‘제7조 및 제17조의 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조항이 바뀌면서 16조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전종덕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말씀하세요.

○**전종덕 위원** 좀 빠르게 넘어오긴 했는데 2조(정의)에서 저희가 필수농자재 정의하는 것들 중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농약하고 비닐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농약은 거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석유도 100%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약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진짜 필수농자재인데 이것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할 때도 빠졌고 이번에도 빠져 있어서 그것을 포함할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품목별로 보면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수도작하고 원예입니다, 시설 말고요. 제일 많이 드는 게 비료, 농약입니다. 그런데 농약이 지금 빠져 있는 이유는 비료는…… 비중은 2번이지만 실제로 들어간 돈은 비중이 너무 적어서 일단 법에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농약도 필수농자재에 포함,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수 있으니까, 거의 90% 의존하니까 여기에다 박아 놓는 게 이 법의 실효성을 훨씬 더 높이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지만 농가 경영비 비중을 봤을 때 얼마 하는지, 예를 들면 쌀 10a에 88만 원 드는데 2만~3만 원 드는 것을 이렇게 올린다면, 사실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농약이 필수농자재 맞습니다. 수도작은 두 번째 경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 비중을 봤을 때는 법에 넣기는 약간 부담이 있지만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위원회에서 모두를 다 결정할 수 있지요. 사료도 결정할 수 있고 비료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또 많이 쓰는 필수농자재니까 농약·비닐 이것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칙 조항에 지원기준하고 이거를 2년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이 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용역 때문에 2년 하신다 했는데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좀 더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준비기간이 2년인데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비료라든지 유류도 일반적인 조항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혹시 2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할 거고요. 이게 2년 후에한다고 해서, 2년 내에 일이 발생하면 지원을 배제하지는 않는 겁니다. 혹시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농약 관련해서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차관님, 공급망 위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망 위협이라는 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 위험으로 이렇게 딱 못박아서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 법을 실제 운영하는데 여기에 갇혀지는, 좀 가두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그 정의를 읽어 드리면, 저도 정의를 읽어 봤는데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임호선 위원** 관계없어요, 크게?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국외적 공급망하고 국내적 공급망이 다 포함됩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원예용 상토에 들어가는 코코피트, 피트모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코코피트 국제가격이 작년 8월 대비 45%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필수농자재……

제가 답변이 속기록에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토에 대한, 지금 이렇게 코코피트 가격이 작년 8월 기준 45%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법이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상토는 비료에 포함됩니다.

○**임호선 위원** 비료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비료의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작동될 수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당연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할 때 공급업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시장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조금 더 강화,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 진입을 예를 들어서 3년이든 5년이든 못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조항 있습니다. 파란색 자료 8페이지 7조 4항에 보시

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치별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해 버리면 실제로 이 기업들은 영업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걸로 가능하다 이거지요,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독점규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한 5년 내에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임호선 위원 이 조항을 그런 취지에서 담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취지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우려사항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입법이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걸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그래서 농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농가의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영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그간 정부가 무기질비료 차액을 보조하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 등의 한시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대책이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농가의 귀책이 아닌 관리가 불가능한 외부요인에 의한 리스크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농가의 생산비 증가는 사실 구조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농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30년간 농촌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보조금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느냐? 저는 정부의 선의나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유류비 폭등이나 전기요금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이러한 노력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상황도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화학비료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 기반 농자재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를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전기 역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되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러한 농자재 사용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별 작목에 차이가 있고 많이 사용하는 농자재 종류에도 차이가 있는

데 정부가 특정 자재에만 지원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혜택 역시 그 농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특정 농가 및 특정 품목, 특정 지자체에만 쏠릴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경비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농업에 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계부처는 이 점을 감안해서 생산비 절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책 개발, 농업 내의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임미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는 사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최소의 안전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어쨌든 보조금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과연 기여했는가라는 관점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일본하고 우리 경우에 농업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이유들을 찾아 가지고 그 근본적인 것들부터 죽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혁명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의 말씀을 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망에 대해서 경쟁력의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그 내용은 이해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호선 위원** 짧게.

○**소위원장 이원택** 저희가 지금 넘어가야 할 산이, 오늘 법안 처리를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임호선 위원** 짧게 한 부분만.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오늘 필버 하시지요?

○**강명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제 임호선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하고……

○**임호선 위원** 아까 상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감 자료 준비하면서 상토 쪽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비료업체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상토업체의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에서 계속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료 구매자금, 지금 너무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상토업체들이 대개 영세업체들이라는 겁니다. 비료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공급망밸류체인아.

그런데 그 점에서 지원방안을, 혹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정책적인 지원 자료하고 앞으로 원료 구매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원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임미애 위원님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우려점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실제로 오늘날 농업의 현실과 농업 생산비 폭등의 문제가 농민들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 또 농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환경 그리고 농업이 계속 축소되고 또 방치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농민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농민들이 거기에 소홀해서 마치 책임이 꼭 농민들에게 있는 것으로 약간 느껴지는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기에 동의가 안 되고, 그런 뜻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제가 임미애 위원님 평상시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동료……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님이 평상시에 펼쳐 오셨던 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이 농민의 책임이기보다는 구조적인, 오늘날 농업의 현실을 만들어 온 대외적인 환경을 포함해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도 잠깐 말씀을……

○소위원장 이원택 예,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 책임이라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비료나 사료, 기름, 전기 포함해서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줄이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감축이라든지 저메탄사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법은 반드시, 제가 제일 처음에 소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재해·재난 수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사료값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은 재난·재해 수준의 대책이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같이 마진 프로텍션(margin protection) 그래 가지고 경영비가 올라가면 보험을 들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본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부는 그런 걸 동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법 제정에 포함돼 있듯이 공급망 위험 등 어떤 재난·재해 시기에, 농민들이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지원하는 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 법은 매년 상시 지원법이 아니고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동 조건이나 요건이 시행령에 담기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다라는 거고 과거 상황의 사례를 놓고 볼 때 20년간 한 번 정도 있었다, 5년에 한 번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매년 지원하는 법은 아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경영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또는 일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국내 공급망 위기라든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폭등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농약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1번으로 논의 한번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법이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품목 잡을 때 농약 부분을 1번으로 논의를 해 주시지요.

전종덕 위원님, 이렇게 마감 지으면 어떨까요?

○**전종덕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을 확정해서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품목을? 지금 품목은 나머지는 정리가 됐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4개는 법에 정해져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되면 되는 건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1번으로 농약을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법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나 이렇게 정하나 똑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면 다 집어넣어야 돼요, 막.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다른 법률 심사로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문금주 위원** 한 가지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차관님, 우리가 이런 공급망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 수준의 상황이 되면 그동안 이 법이 없어도 지원이 다 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비비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어찌 됐든 지원이 됐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예비비가 아닌 상시적인 기금을 놔둘 거예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건 하나의 일반적인 농업인 지원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농특회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농업인의 재난 위기상황의……

○**문금주 위원** 이 법에 따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당연합니다. 그런데 매년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될 때 예산이 세워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금주 위원** 그 가동되는 때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면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준비를 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도 있고, 그때 예산을 세우게 되거나 또 그 기간이 이삼 년 흘러간다면 그다음 해에도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필수농자재 지원법이라고 해서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법이 통과되고 나니 이 법에 따른 예산이 끌지 지원이 끌지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와 베릴까 봐, 그래서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정작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법이 문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농자재 폭등에 따른 그 차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이 법이 작동된다고 하시면 저는 애초의 취지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이 법이 작동되기도 하지만 지금 폭등하고 있는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 늘리는 내용으로서 이 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 아예 기조가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공급망 위기 때는 당연히 작동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상황이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필수농자재가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꼭 농자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재료가 각 국가의 정상적인 물가 상황이 있고 그 물가의 어떤 상승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종덕 위원** 이건 아예 법의 내용이 바뀌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문금주 위원** 표현상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은 이 법이 생김으로써 최근에 급등한 생산비에 대한 뭔가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앞에 조건이 붙여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해·재난 수준? 그러면 그건 평상시에도 예비비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법에……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재해·재난 수준이라는 표현을 차관님이 쓰셨는데 법적 용어는 국내외 공급망 위기에 따른 거라는 거고요.

○**문금주 위원** 그런 표현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걸 매년 지원이 아니고 재난·재해 수준의 공급망 위기가 오면 지원하는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발동……

아까 시행령에 그러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진단을, 예를 든다면 현재 시장가격에서 10% 올랐다, 20% 올랐다, 30% 올랐다, 40% 올랐다, 100% 올랐다 했을 때 이게 발동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발동 조건을 10%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20%로 할 거냐, 30%로 할 거냐인데 5%, 10%로 하면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상적으로 지원하니까 농업 혁신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거고 국내 공급망이라든가 국외 공급망이 무너졌거

나 전쟁이 발생했거나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그게 20% 올랐다, 30% 올랐다 그럴 때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은 되게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혹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비의 부담을, 그래서 농자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이 법에 접근하는 위원님들과 국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농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차이가 좀 생기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문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진짜 뭐가 갑자기 폭등하게 되면 굳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걸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끓여 두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안정성은 있으나 신속성이 떨어지니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려는 됩니다.

이게 이 법을 바라보는 농민과 위원과 집행부에 온도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국내 농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농업은 70%가 석유농업입니다. 국제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지금 농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 이 법이 나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농업 내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뒤따라야 뒤따라야 된다는 제안을 아까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들도 다 온도 차이가 있으니 이것과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린다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이것을 어느 분이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재난·재해 수준으로 동일시하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놓고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모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돈을 농업인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50% 상승했다면, 이 법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게 되는데 10% 상승 시하고 20% 상승 시, 30% 상승 시 다 대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자제시키거나 물량을 더 풀거나 아니면 분할해서 인상하거나 하는 조치들이 들어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돈 주는 건 언제 줄 거냐? 돈을 드리는 건 우리가 조건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대책은 완전히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위기 대책별로 뭘 할 것인지, 돈을 주는 건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조건에서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전제는 돈 드리는 게 아니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난번 1차 토론 때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공급망 부분에 대한 논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부분을 붙이자고 의견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할 때 농가의 경영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를 들면 농자재 가격이 정상적 상승이 아니고 어떤 공급망에 따라서 폭등했을 때의 대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돈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완전 폭등했을 때…… 5% 상승했을 때, 10% 상승했을 때는 분할을 한다든가 물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걸로 해결해 가면서 가격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제를 동원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30%, 40%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정부가 보조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매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다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해부터 올라갔어, 30%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가 기준이라면 올해 지원하겠지요. 내년에도 또 올라갔어,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매년 상시적으로, 5%든 10%든 물가상승률 또는 정부가 물량 풀고 할인행사 하고 뭐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커버 할 수 있는 걸 넘어섰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임호선 위원 간사님, 그러면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토를 예를 들어 보시지요. 작년 8월 기준 금년에 45% 올랐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이제 대상이 되겠지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작동된다고 했을 때, 정부 측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수 있다는 건지 그 예를 한번……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매뉴얼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는, 지금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안보 품목은 무기질비료입니다, 질소·인산·가리. 그런데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는 유기질비료입니다. 코코넛 태워서 하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안보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제가 지금 코코피트의 관세율이 얼마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관세를 할당관세로 해서 낮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정말 힘들다면 융자금을 넓혀서 융자금을 드릴 겁니다. 그게 1, 2회 심각하지 않은 단계에서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예 없어서, 원예용 상토로 쓰는데 없다, 너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 짓겠다고 그러면 제일 힘든 건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비싼 가격으로 그걸 사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시키려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관세나 자금으로 풀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호선 위원** 예, 저 이해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다 다르세요. 다 다르고, 이렇게 들으면 알겠는데 또 다시 들으면 이게 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망 위협이라는 말이, 이 포괄적 개념이 다 각자 해석을 달리해 버리는 것 같아서……

처음에 위원장님 얘기 들을 때는 이 법의 취지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다르게 들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은, 공급망 위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서로 해석이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게 시행령에……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법에……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아까 그 시행령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급망 위험에 따른 발동 조건이 그 시행령에 담기는 겁니다. 그 시행령을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저희들이 봐야겠지요.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법대로만 해석을 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쟁이라든지 갑자기 석유 대란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법이 발동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거의 발동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농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종덕 위원** 안 올라가는데 지원하라는 말은 아니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든 간에 농자재 가격이 20%, 30% 폭등을 했어, 그러면 그건 어떤 원인이겠어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해석이……

○**소위원장 이원택** 그게 어떤 원인이겠냐고. 그건 다 공급망이잖아요.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공급망이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다 공급망이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갔는데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물가인상률이랄까, 1원 만큼 올라갔는데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시행령에 예를 든다면 10%까지 올라갔을 때는 물량으로 한다든가 업체에 금융 지원한다든가 할인을 한다든가 할당관세를 한다든가, 20%까지는 어떻게 한다든가인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고 하면 외부적 요인만 해당이 됐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 글로벌을 빼자고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냥 공급망 위기로 하자. 공급망 위기로 하면 농자재 가격이 국내적 요인인든 국외적 요인인든 올라가는 이유가, 예를 들면 독점을 했든 담합을 했든 뭘 했든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든다면 10% 단계, 20% 단계, 30% 단계, 40% 단계 이렇게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전종덕 위원 5년에 한 번 정도로 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헛갈리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지난 20년간 경험이 네 번 발동했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돈 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건 돈 줄 때만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필수농자재는 평소 저희들이 위칭을 합니다. 10% 올랐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쓰지? 20%는 어떤 대책을 쓰지? 만약에 올라 버리면 돈을 준다는 그런 대책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지금처럼 올랐으니까 이 법이 작동한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법은 작동하고 있는데 돈을, 비용 상승분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올랐을 때 그 때 작동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항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가 되는 순간 항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이원택 예,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문대림 위원님도 듣고 문금주 위원님도 듣고 다 했는데 농업인들이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야, 정말 잘했다. 우리 속을, 고민 사항을 좀 풀어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께서는 ‘내가 조금 올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마 피부에 닿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만들어 놔도 농업인이 들지 않으면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법의 의미를 돈을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아니라……

○김선교 위원 이 법안을 낸 게 필수농자재하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그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안을 다시 공급망 위협이라고 했는데 필수농자재로 그냥 놔두면 어때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도 다 있을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필수농자재가 공급망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0% 일어났을 때도 돈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지원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마는 공급망 위기와 무관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추계라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과잉 추계가 될 수 있고.

또 이미 다른 법에서……

○김선교 위원 차관님, 이 법안을 낸 분들이 공급망 위험 때문에 냈다고 보지를 않아요, 내가 이 내용을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번 예산에도 비료비 같은 이런 것 제대로 못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법안을 의원님들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시행령에 제대로 담아 가지고 내요. 어차피 법안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금주 위원** 저도 제안 하나 드릴게요.

3조에 보면 책무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책무에는. 그런데 목적하고 정의에 들어가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하시는 말씀 들어 보면 굳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을 안 넣어도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여서, 방금 말씀 주신 거라면 이러이러한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무하고 다르게 목적하고 정의에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을 넣어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전종덕 위원**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단계별 대책들을 마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저번에 제일 처음에 소위에서 상정했을 때 사실 투입재 보조는 WTO에 따르면 금지는 아닙니다마는 감축대상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2조 원을 지원했다면, 우리 AMS 한도는 1조 4900억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넣었던 게 너무 많은 지원을 배제하고, 그리고 이 지원을 했을 때 국제기구에서, 이건 투입재를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구나 해서 우리가 국제기구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걸 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급망 위기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할 때 공급망 위기를 넣게 되면 그 위기는 예를 들어 50%라면 50%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빠져버리면 지금처럼 이삼십 프로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요소값이 21년 5월 달쯤에 586불인가 486불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948불대로 올라갔습니다, 한 몇 개월 만에. 그런데 22년 초에 그 가격이 원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500대로. 그런데 지금 무기질비료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급망 위기가 아니라 그 당시 환율이라든지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렇게 되면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과잉 보조라든지 농업 혁신, 과잉 보조된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단계별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전종덕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장님 의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전쟁이나 국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물가상승분보다 더 폭등해서

더 올라갈 경우에는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른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50% 올라갔을 때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물가상승률에는 환율도 반영되고요. 인건비도 다 반영돼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해석……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종덕 위원** 저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농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는 위원장님하고 같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게 농업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논쟁하는데 아까 공급망을 불안 이유가, WTO가 개판이기는 하지만 WTO 기준에 농업보조금을 주는 데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 총액을 벗어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고 하는, 공급망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해야 농업 보조금의 한도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걸 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자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 1차 토론할 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것 다 공유한 걸로 제가 보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지금 심사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인상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종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법을 하려는 이유가 농업 경영비·생산비가 폭등하는 경우에 이것을 농가가 다 부담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생산비 부담 완화시켜서 농가의 소득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로 이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내신 의원님들의 법안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대부분 다 그런 취지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급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상황이든 국외 상황이든 이런 농가 경영비가 폭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다 공급망 위기니까,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위기를 넘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오히려 축소하고 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애초의 법 취지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내용은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애초의 취지에서는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위기라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시행령에서 나온다니까.

○**전종덕 위원** 시행령에다 넣어서 하고 저는 법안 제목에서는 이 공급망 위기라는 것

을 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헛갈리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경영비가 폭등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산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노무비하고 토지용역비입니다. 나머지 경영비는 비교적 적고요. 경영비가 폭등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공급망 위기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전에서 22년도에 전기료를 23원인가 올려서 그때 좀 올랐던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 공급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왜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도 한정을 하는 건 맞고요. 이걸 다 빼 버리면, 일반적으로 그냥 경영비만 오르면 지원해 주자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도 이 법은 환영을 못 받을 거고요.

○**전종덕 위원** 기준을 정할 거잖아요, 지원하는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 거기에 공급망 위기를 넣으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공급망이 있는 법하고 없는 법은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다른 법안 빨리 하시지요. 진도가 안 나가.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것은 경영비가 폭등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전종덕 위원** 예, 거기에 동의한다고요.

○**임미애 위원**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니까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이미 충분하게 논의는 된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고 법안 통과시키면 논란될 것 같아요, 저는. 저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김선교 위원** 차관님, 시행령에 잘……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모호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거예요. 농민들한테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기대치에 부족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전종덕 위원** 아니, 일상적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급등, 폭등 이런 경우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시행령에 급등과 폭등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가 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법안의 제목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 법안의 제목만을 봤을 때는 많은 농민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다, 마치 그냥 내가 사용하는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늘상 지원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법안은 아까도 말씀하신 경우에 공급망의 위기나 농가의 경영비가 아주 급격히 예상하지 못하게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해서 농가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5 대 5로 덜어 주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냥 평상시에 늘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제목 자체를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관련되어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이렇게 바꿨어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일상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했던 문제가 받아들여진 거네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거 1차 때 합의된 거예요, 1차 때.

○**임미애 위원** 위원님, 이거를 빼자는 얘기가 지금 논쟁이 되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전종덕 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반대를 안 했는데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거로 가면 전체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전종덕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는 이 문항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만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나는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없이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제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좀 결정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을 잘 검토해 주셔서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어떤 시행령(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약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1번으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팬창으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을 제가 애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내외적인 공급망 상황에 대응해서 농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지원되는, 발동되는 법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선이나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저는 시행령에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 드리려고,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제가 부탁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목 보면 저는 사실은 ‘공급망 위험 대응 등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

률'이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의결했으니까, 공급망 위험 대응이라는 이 문구 자체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기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아려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공급망 위험 정의를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볼 때 농자재 인상 요인의 한 97%는 다 배상됩니다, 폭등했을 경우는. 저도 이렇게 따져 보는데……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11시24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이만희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1번, 농산물 가공·저장·유통·판매업에 대한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만희 의원님 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계시고 또 이와 약간 다르게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농업의 범위에 유관 산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두 개정안의 규정 형식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농업 유관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농업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 농업인의 범위 확대로 농지 소유, 세제 혜택 또 공익직불금 지급 등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규정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3페이지부터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농산업에 관한 사항을 농업·식품산업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이만희 의원님 안에 따라 농산업 정의를 활용해서 농업·식품 관련 지원체계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3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근거 신설도 소멸 위험도가 높은 농촌지역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문에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그 수정의견을 13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농식품 공급정책 수립 원칙 마련에 관한 사항은 윤준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

용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공급정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의 증대 및 수입과 비축의 조화 같은 원칙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산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 23조에도 유사한 취지의 조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농식품 공급정책 수립·시행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의의가 있다고 보이며, 만약 개정안을 채택할 경우에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농지 보전정책 목적 구체화입니다.

개정안은 농지의 적정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정리가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칙은 시행일을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시간들을 고려해서 윤준병 의원님 안은 3개월 또 이만희 의원님은 6개월로 하시는데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21페이지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농산물 가공·저장·유통·판매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만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정할 때 상세하게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농업하고 식품산업 정의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나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수용했고요.

5페이지 보시면, 농업으로 농업이 확장되면서 농업, 식품, 농촌, 농산업을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야 될 건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일성 관점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농업은 지금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밖의 농산업’으로서 통일을 시켜서 모든 단어들을 통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그 단어로 정리했고,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 5호 ‘그 밖에’를 ‘사업체 수 등 그 밖에’라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식품 공급정책 수립 원칙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7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국내’를 빼고 ‘농업생산’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국내도 있지만 해외 농업 개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농업생산 증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국내를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농지 보전정책의 목적 구체화도 수정의견에서 약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9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직접 소비하는 농산물하고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농지면적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식품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윤준병 의원님 안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니고 일반 음료수라도,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지를 적정하게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도 농지 규제를 완화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좀, 해석이 너무 나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차라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이렇게 하시면 좀 오해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부칙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고려해서 6개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페이지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윤준병 의원안으로 정부 측이 동의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방식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정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방식은 윤준병 의원님 방식인데 내용은 이만희 의원님 내용을 많이 넣어서, 형식은 윤준병 의원님 형식이고 내용은 이만희 의원님 안에 있는 걸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3페이지의 수정의견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금 수정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의견 없으시지요?

○임미애 위원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만희 의원안에 있는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그다음에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그다음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투입재 산업은 수정의견 보시면……

○임미애 위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후방 산업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전후방 산업은 굳이 정의를 안 해도, 만약에 정의하면 또 다른 정의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후방 산업들입니다, 예시 든 것들이. 그래서 복잡한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전후방 산업은 삭제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앞에 열거된 것이 전후방 산업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으니 뺏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전부기 때문에 굳이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농업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네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업은 그대로 있는데 농업 자체의 범위가, 저희들이 주로 농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책 대상이 농산업으로 명시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농업 범위는 그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농업인에서 확대되면 예산도 그만큼 확대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앞으로 농산업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농업 정책의 방향이. 그래서 지금은 농업이 중심이지만 앞으로 전후방 산업을 키워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아직?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예산을 짜 봐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놔두고 농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도입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도입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든다면 농산업이라는 개념에서 반려동물 산업 이런 것은 뭘로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산업 분류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려동물……

○**전종덕 위원** 농촌 관련 서비스업이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촌 관련 서비스는 관광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산업 분류표를 여기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체험시설 뭐 이런 거겠지요, 체험영농.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런 것들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농기계는 어디로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기계는 투입재 산업에 들어갑니다.

○**임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전후방 산업 외 기타.

○**임호선 위원** 그러면 법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 여기도 가운데 점 찍고 ‘농산업 기본법’으로 이 법안을 바꿔야 맞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게 하면 전부개정을 해서……

○**임호선 위원** 아니, 전부개정 아니라 하더라도 법명은……

○**이만희 위원**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임호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식품산업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이만희 위원**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지요.

○**임호선 위원** 예, 그래서 ‘식품·농산업 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오늘 법은 이 테두리 안에서 심사를 하고요. 농산업, 저도 좀 약간……

이제 농식품부가 가져야 할 게 지금 1차 산업인 농업도 있지만 농식품부가 끌고 갈 전후방 산업들을 어떻게 키워 갈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든다면 그린바이오네 뭐 많이 있잖

아요. AI 로봇이네, 농업 로봇이네 이런저런 여러 산업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과 진흥과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은 일단 이 법 테두리에 집어넣고 정부도 농산업 기본법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도 임호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충분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오늘은 이 법 테두리에서 심사하고 농산업 기본법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좀 논의를, 제가 발의하든 호선 형님이 발의하든 정부 측에서 발의하든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5페이지, 농산업에 관한 사항을 농업·식품산업 지원체계에 포함,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페이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근거 신설……

13페이지, 48조의2 1항 5호의 ‘그 밖에’에 ‘사업체’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 밖에 사업체 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 밖에 사업체 수 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서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농업 분야 사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농산업 쪽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체고요, 통계청에서 매년 사업체 수 통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이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지는 사람도 봐야겠지만 거기의 사업체,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경영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체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를 든다면 사업체가 많은데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리고 사업체가 아예 없으면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소위원장 이원택** 거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그게 어떤 의미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적은 곳을 우선 지정하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왜냐하면 사업체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의 생태계가 거의 깨져 있다는 얘기고요, 경제적 생태계가.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고령화율이나 인구 규모, 50세 미만의 농업경영자 추이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넣건 안 넣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열거된 각 호로 비추어 봤을 때 이미 사업체 수는 추이가 어떠하다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사업체를 넣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능은 하겠지만요 위에 있는 것은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구나 고령화나 경영자 추이는 인구구조적 측면입니다.

밑에 사업체를 넣는 것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 사업체 수는 경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가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경제력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있으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을 넣어 보자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에 대해서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인구구조나 사회·경제적인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그냥 하시면 되지 않나? 그냥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담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냥 사업체 수 넣지요, 뭐.

○**임미애 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인구구조나 사회적·경제적인 것을 좀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군이나 사례가 있나요? 어떤 시군이나 사례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부 관련 법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 89개의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행안부 지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중에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은 약간 다른 게 기본적으로는 89개, 거기에 부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는 69개고요.

여기 보시면 읍면동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어느 군은 읍에 가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읍을 벗어나게 되면, 면 단위에서 보면 너무 생태계가 깨져 있어서 여기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풀거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은 모르시는 거지요?

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청 절차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과 사

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보통 법안을 다룰 때는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수반되는 예산, 재정추계가 떨리게 마련인데 농림부는 재정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해 놓고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질 계획인지를 그래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사업들이 있으면 구조전환에 필요한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주거나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의무적으로 돈을 지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의 근거는 농업용지의 용도제한 규제를 좀 풀어 주는 데 방점이 있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구조전환 신청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김선교 위원** 농지법 같은 것 풀어 주는 이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에 농사를 짓을 사람도 없는데 규제를 봐두면 농업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김선교 위원** 그러면 감소지역이 없는 자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뭐 거기는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김선교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임호선 위원** 아니,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 인구감소지역……

○**소위원장 이원택** 읍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호선 위원**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니까 감소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읍면동이 감소하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김선교 위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그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어느 지역이든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별도의 조항을 넣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농지 완화하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전체적으로 완화가 아니고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다 나갔는데 그 농지를 그대로 두면 농사지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구조를 좀 전환하자는 그런 의미지 완전히 농지를 풀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지금 하신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농지 규제 풀어서 농지 용도를 다른 것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은……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농지를 규모화해서 제대로 된 농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인구가 없고 소멸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으면 이곳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개발과 연결시키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을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좀 다른 검토를 해 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종덕 위원** 오히려 저는 구조전환을 하면 그렇게 소멸지역이나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을 좀 더 현대화해 준다든지 주택이나 이런 것을 개량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사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를 뭔가 다른 용도로, 개발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이 구조전환사업이 정확히 뭔지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사람이 없어진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미래에는 농촌에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기계화·자동화되어 있을 겁니다. 창고만 있고 거기서 기계가 나와서 농사를 짓는…… 지금 사실 땅이 넓은 나라에 가 보면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GPS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콩 가공공장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어서 콩을 가공하고 직원들이 살고 이런 생태계가 형성된다면 그런데 대해서 맞추겠다는 거지 사람이 안 사니까 농지를 다 풀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그러니까 농촌구조전환을 하는데 구조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아직 농림부에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유형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을 네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내용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근거 신설 이 부분은 일단 빼고 나머지 심사합시다.

일단 이것은 농지법과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안심사를 계속 질의로 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3번은 삭제하고 우리 농지법 심사할 때 아까 그 구조전환 근거라든가, 네 가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 위원님들께 주시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전종덕 위원**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 3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전종덕 위원 48조의2, 13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예, 48조의2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심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16페이지, 수립 원칙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자를 삭제해 달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해외에서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농지 보전정책의 목적 구체화 이것은 수정의견 팬참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요, 수정이 아니고요.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된 식품의’까지를 빼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종덕 위원 빼 달라고, 삭제해 달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금 수정의견에는……

○소위원장 이원택 음료수가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를 들면 음료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농지를 더 달라, 나는 거기에 공장을 지어야겠다 이렇게도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원료 농산물이거나 최종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하고요.

부칙은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삭제하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삭제입니다.

○임미애 위원 다음에 심사해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우리 농지법 심사가 농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서 같이 검토하자고 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삭제를 하시면……

○임미애 위원 그런데 구조전환우선지역 이 안을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 의견 팬참으십니까?

○이만희 위원 아마 차관님께서 발언 중에 조금 의도치 않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농촌소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지역의 농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서 그 지역을 좀 더 활기차고 제대로 된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저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공동경영하고도 공동영농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가야 될 방향은…… 지금 이번에 이 정부가 국정과제로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영농이라는 부분들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규모 있게 적용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도 저는 개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구조조정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이 지역에서 정말 규모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이걸 넣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치 구조조정해서 농지 다 없애고…… 농지 없애 봤자 거기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의 농업생산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영농 관련해서 국정과제 선정해 놓고 26억 예산 배정했어요. 이것 진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농지를 규모 있게 이용하거나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이게 제안됐다는 얘기를 그냥 농지를 없애 버리자는 쪽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셔서 약간 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제가 분명히 해명을 해 드렸고요. 제가 농지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콩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규정상 안 된다, 그래서 콩 공장을 지어서 산업이 같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주자는 것이지……

**○이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많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규모화된 영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차 특례를 준다든지 세제 특례를 줘서 거기서 농업이랑 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 생태계 회복이 목적이었지,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풀어서 농지를 없애 버리자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잠깐……

제가 아까 이게 이만희 의원님 법안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만희 의원님 물어봤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삭제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경북의 임미애 위원님 말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 삭제하고, 농지법과 연관돼 있으니까……

이것 구조전환 취지는 저도 이해돼요, 농촌에 있으니까.

**○이만희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농지법 토론회 할 때 이 내용까지 다 넣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하고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 넣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장님, 그런데 농지법하고 기본법은 법이 다릅니다.

삭제를 해 버리면 다시 또 하셔야 되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발의해야지요.

○**전종덕 위원**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요.

○**이만희 위원** 그때 넣으면 되지, 그쪽에다가.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필요하다고 하면 또 발의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 안하면 제가 할게요.

○**임미애 위원**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농산물의 법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농산물을 활용한’ 이것 얘기할 때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된 식품 이렇게 됐을 때, 최근에 청년농들이 들어올 때 주로 곤충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곤충 재배해서 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곤충 재배업은 축산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축산업으로 해서 들어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곤충 재배업은 축산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곤충이 축산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다 읽었는데 다시 읽어야겠네요.

○**임미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 읽지는 않고요.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오늘 회의 운영을 12시 반까지 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아마 필버가 진행될 것 같은데 필버 중간에 의장님 허가를 득해서 오늘 여기 쌓여 있는 법안 심사를 다 하면 어떨까요?

○**임호선 위원** 예, 필버 시간에 하시지요.

○**강명구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도 들어야 되지, 뭘……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의장님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강명구 위원** 어떻게 그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강명구 위원님, 본회의 사수조예요?

○**강명구 위원** 사수조예요, 제가. 오늘 본회의 하루 종일 들어가야 돼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이나 김선교 위원님은 아니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그게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런저런 것 해 가지고 오후 4시 정도 이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금주 위원 필버 들어가면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은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시 반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정족수가 안 돼요. 정회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어차피 성원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딱 12시네요. 12시에 맞게 다 나가셨는데……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속개 시간을 문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주요 쟁점 법안 심사 때문에 지금 법안 심사가 많이 밀려 있어요, 쟁점 법안 토론 때문에.

그러면 문자로 시간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필버가 아마 전원 재석이 원칙으로 돼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 국민의힘은 전원 재석이 원칙입니까?

○강명구 위원 우리 6시까지 재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시 이후로 하세요, 6시 이후.

○소위원장 이원택 문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 위원(10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 ○청가 위원(1인)

정희용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농업정책관 윤원습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